

---

# 2021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 수준평가 설명회 질의회시 답변

---

2021. 8.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작동성평가(직영 및 도급사업장)의 경우 평가일정이 1일인데… 지역본부 지사(청사) 방문외 별도 도급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기관의 도급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음.</li> </ul>		
<p>〈Ⓐ 안전보건경영체제〉</p> <p>평가지표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라 함은 안전보건관련 경영 운영방침이나 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인가요?</li> <li>○ ② 안전경영 실천의지라 함은 안전보건관련 개선을 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했는지의 여부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 나타남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는 편람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착안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면담과 현장 이행수준을 연계지표로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착안사항)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철학, 안전조직 역량강화, 현장활동 참여, 수급업체 및 발주현장 등 이해관계자 지원, 노사소통, 사망사고 예방 활동 등 공익적 측면의 안전보건 실천의지(면담 평가)</li> <li>- (연계지표)</li> </ul> </li> </ul>		
<p>〈Ⓐ 안전보건경영체제〉</p> <p>평가지표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연계 평가 항목</th> </tr> <tr> <td style="padding: 5px;">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 사고사망 감소 성과         </td> </tr> </table>	연계 평가 항목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 사고사망 감소 성과
연계 평가 항목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 사고사망 감소 성과			
<p>〈Ⓐ 안전보건경영체제〉</p> <p>평가지표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등 현장 이행 수준(A-2, B-6, B-7, D-3)을 최고경영자 면담 평가항목 결과에 반영하는 방법 및 배점기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는 최고경영자의 면담 결과와 현장 이행 수준(A-2, B-6, B-7, D-3) 결과를 적정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함.</li> </ul>		

질의	답변
<p>&lt;(A) 안전보건경영체제&gt;</p> <p>평가지표:A.3. 안전보건경영 투자</p> <p>○ 평가 착안사항에서 언급된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내역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과 달리 어느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해야 적정한 것인지,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적정한 것인지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특성이 상이하여 예산 규모와 집행 수준도 각기 다른데 “적정성”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는 것인지요?</p>	<p>○ 공공기관의 안전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 계획에 포함된 참고3. 안전예산분류 기준과 편람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 착안사항인 사망사고 예방 및 수급업체(건설발주사업장 포함)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진단 및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내역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집행율은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대비 집행 실적을 평가함.</p>
<p>&lt;(A) 안전보건경영체제&gt;</p> <p>평가지표:A.3. 안전보건경영 투자</p> <p>○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관련 기준은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작성 가이드(안전예산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편람에서 얘기하는 안전예산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p>	<p>○ 안전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료증빙은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한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그 외 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제고를 위한 안전 예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의미함.</p>
<p>&lt;(B) 안전보건관리&gt;</p> <p>평가지표:안전보건교육</p> <p>○ MSDS의 교육의 경우 시간과 횟수가 정해지지 않아있는데, 사용하는 물질에 대하여 근로자에 교육 후 추가적으로 교육을 더 해야하나요?</p>	<p>○ MSDS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및 동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교육하기 바람.</p>

질의	답변
<p>&lt;(B) 안전보건관리&gt;</p> <p>평가지표:안전보건교육·인식·활동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 및 근로자 면담을 본평가 및 현장작동성평가 시 각각 실시하는지?</li> <li>○ 면담 시 소요시간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작동성 평가대상 기관의 경우 ③-4-2 지표의 면담은 본 평가와 현장작동성 평가 시 모두(각각) 실시 하며, 약 15분 내외로 소요예정임.</li> </ul>
<p>&lt;(B) 안전보건관리&gt;</p> <p>평가지표:위험성평가, 도급사업의 안전 보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 관련, 편람을 통해 평가 착안사항을 점검한 결과, 두가지 평가항목에 중복되어 평가되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세부 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위험성평가)와 B.6(도급사업의 안전 보건관리)는 별도 지표임. “위험성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 및 수급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준, 내용, 활용 등 모든 사항을 평가하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항목은 도급작업 절차상 작업 전 위험성평가 활동이 반영되고 실시되는지 여부를 평가함.</li> </ul>
<p>&lt;(B) 안전보건관리&gt;</p> <p>평가지표: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사항에 안전수준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찰단계에서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리방안이 없음</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서 요하는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 공공기관 도급계약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가계약법입니다.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한 모든 활동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업체선정 계약 전은 그 업체의 적격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계약요건을 반영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지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동 지표는 그 외 도급 계약에 대한 수급업체 선정절차 마련이나 이행 여부가 평가됨을 참고바람.</li> </ul>

질의	답변
<p>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고 국가 계약법이 선행되어 바뀌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침 및 매뉴얼(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 지침 등)에서 요하는 업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원은 사업예산 2억원이 넘는 경우 조달청 중앙조달 (협상계약 등)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법규로 인해 계약상대방에 부적격 수급인의 참가를 제한하는 방법 등은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조달청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li> <li>○ 부득이하게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요청 사항(제안요청서)에 안전관련 항목 추가와 관련 배점 강화 정도로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또한 배점 배분이나 항목선정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상대방(적격수급인)의 선정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에 대해 문의함.</li> <li>○ 또한, 나라장터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 입찰 수의계약 등 업체선정과 관련된 평가가 제한된 경우,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어떤식으로 적용하여야 할지 조언 얻고자함.</li> </ul>	

질의	답변
<p>&lt;(B) 안전보건관리&gt;</p> <p>평가지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착안사항 중 “수급업체 작업(공정) 현황관리”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자체점검 및 준비를 위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li> <li>○ 해당 평가착안사항은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요,</li> <li>○ 작업(공정) 현황관리라는 것이 도급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의미하고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작업 현황관리는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해당 도급기관에서 관리하는 수급업체들의 작업내용, 인력구성 및 건설도급일 경우 진행공정, 진행률 등에 대한 현황관리를 의미하며, 관련사항은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20.9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p>&lt;(B) 안전보건관리&gt;</p> <p>평가지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착안사항 2. ❶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등) 제시 등 입찰단계의 조치사항』상기 내용이 입찰단계에서 도급인(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수급업체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지, 입찰에 참가하는 수급업체에게 해당 도급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내용은 도급인(공공기관)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주요제시 사항에 대한 작성기준과 위험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참고로 수급업체에서 올바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마련된 지원체계를 평가하는 사항임.</li> <li>○ 관련사항은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20.9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질의	답변
<p>&lt;⑧ 안전보건관리&gt;</p> <p>평가지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p> <p>○ B.6~7 지표 평가 수검시 도급사업(건설도급 포함)관련 모든 도급사업관련 자료를 준비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2개 도급사업에 대한 자료(ex) 수급업체 위험성평가자료, 안전보건협의체, 협동안전보건점검, 위생시설 지원 등….)를 준비만하고 평가위원 추가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요?</p>	<p>○ 모든 도급사업 관련 자료를 준비하되, 수급업체가 많은 경우 수급업체 1~2개에 대한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람. 다만, 평가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p>
<p>&lt;⑨-1 안전보건활동-직영 및 도급 사업장&gt;</p> <p>○ 수준평가 편람 자료(서비스집중형) p. 24 [평가지표 총괄표]에 “현장작동성평가 비대상 기관은 본평가 시 전 지표에 대하여 평가”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⑨-1 적용지표에서 본평가는 모두 X, 현장작동성 평가만 O로 되어있지만 비대상 기관은 ⑨-1 지표 역시 본평가로만 진행된다고 이해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 ⑨-2 건설발주 지표 해당없음)</p> <p>○ 순번1의 질문사항이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20년도 평가지표와 달리 21년도에는 ⑨-1 적용지표에서 본평가는 X, 현장작동성만 O로 된 것이 현장작동성 비대상 기관들은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P.51~54의 세부 평가내용 역시 적용 대상이 ■현장작동성 평가로만 표시 되어 있어 혼동스럽습니다.</p>	<p>○ 현장작동성평가 비대상 기관은 본평가 시 ⑨-1 적용지표, ⑨-2 건설발주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100% 반영함. 향후 혼동이 없도록 편람 구성하겠습니다.</p>

질의	답변
<p>○ 수준평가 편람 자료(서비스집중형)      p. 23 산출 비중 설명에서, “⑧안전 보건관리, ⑨안전보건활동 지표 및 세부 평가 내용이 본평가와 현장 작동성평가 중 어느 하나에서 전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것을 100% 반영”이라는 설명 또한 현장작동성평가 비대상 기관이라면 현장작동성 적용 지표는 논외의 사항이며, 본평가 100%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p>	
<p>&lt;⑨-1 안전보건활동-직영 및 도급 사업장&gt;</p> <p>○ 우리기관은 지난해 “현장작동성평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⑨-1 항목은 “본사 사옥 내 작업장(전기실/기계실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장 작동성평가” 대상으로 “직영 및 도급 (건설포함) 사업장” <u>으로</u> 분류되었습니다. 여기는 말하는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은 “본사 사옥”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를 제외한 지사(사업소)만을 포함하는 것인지요?</p> <p>○ 위의 질문에 따라 “현장작동성평가” 대상이 지사(사업소)를 의미하고 지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본평가 시에 ⑨-1 항목에 대해 “본사 사옥”은 평가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요?</p>	<p>○ 본사를 제외한 지사만을 평가함.</p> <p>○ 현장작동성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본평가 시, 본사에 대한 ⑨-1 항목을 중복평가하지 않음.</p>

질의	답변
<p>&lt;④-1 안전보건활동-직영 및 도급 사업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평가시 ④-1 안전보건활동(작업장) 지표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편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평가시 ④-1지표관련 청사 내 기계실, 실험실 등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작동성 평가에서 ④-1 지표를 평가 하였다면, 본 평가 시 ④-1 지표에 대한 평가는 없음. 다만, 다른 지표에서 기계실, 실험실 등이 연관되어 있다면 해당 되는 곳을 방문할 수 있음.</li> </ul>
<p>&lt;④-1 안전보건활동-직영 및 도급 사업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표 정의에 나와 있는 공사 현장의 범위에 건설발주사업장까지 포함이 되는지?</li> <li>○ 포함이 된다면 건설발주사업장 방문 시 C.1.1~C.1.4 지표 포함해서 평가 진행 할 것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 및 도급사업장 평가와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는 별도로 수행되며, 중복 평가하지 않음. 다만,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도급인 책임을 지게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직영 및 도급 사업장(④-1)에 포함되어 평가함.</li> </ul>
<p>&lt;④-1 안전보건활동-직영 및 도급 사업장&gt;</p> <p>평가지표: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사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제외’의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인 구축물 등은 국토 안전관리원 등 타 점검기관의 확인 대상이므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설비 자체점검활동 부분에서 제외함.</li> </ul>
<p>&lt;④-1 안전보건활동-직영 및 도급 사업장&gt;</p> <p>평가지표: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개요 : ‘2021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편람_서비스집중형(2021.8.6. 수정 게시본)’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평가 항목에서 평가하는 내용 중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의 경우 참고자료로 ‘안전작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작업허가제도는 고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활동임. 해당 지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과 무관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며 참고자료로 제시된 ‘안전작업 허가 제도(KOSHA GUIDE P-94-2019)’는 기관에 작성 예시를 제공하기 위해 표기한</li> </ul>

질의	답변
<p>허가지침(KOSHA GUIDE P-94-2019)' 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지침에 따르면 '안전 작업허가' 의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임.</p> <p>○ 질의내용 : 본 기관의 경우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에 해당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평가항목 C.1.4.에 대한 평가점수 산출 시 안전작업허가제 미운영에 대한 감점이 있는지 여부</p>	<p>사항임. 이에 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른 고위험작업을 파악하여 안전작업허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p>
<p>&lt;④-2 안전보건활동-건설발주 사업장&gt;</p> <p>○ 건설발주사업장 현장 선정 시 공공 기관 기초조사표에 작성 제출한 건설 공사 보유현황에 한정하여 선정할 것인지?</p>	<p>○ 건설현장 선정은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기초 조사표와 산재가입현황을 추가로 적용하여 선정함.</p>
<p>&lt;④-2 안전보건활동-건설발주 사업장&gt;</p> <p>○ 현장작동성평가(건설발주 사업장)의 경우 ④-2 안전보건활동 지표만 평가하는지요? ④-1 안전보건활동(작업장)지표는 평가지표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p>	<p>○ 건설발주 사업장은 ④-2의 7개 세부 항목만 적용되며, ④-1 은 적용되지 않음.</p>
<p>&lt;④-2 안전보건활동-건설발주 사업장&gt;</p> <p>○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 대상여부 관련 질의내용 : '21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기초조사표 및 설문 제출 시 (평가지원부-728, 2021.5.12. 시행), 건설 공사 보유현황 없었으나 '22년 1~2월 중 본평가 진행 시 건설공사가 착수되어 일부 진행(건설공사 계획, 설계 등)되고 있는 경우, 평가분야 중 '④-2 안전보건 활동(건설공사 발주현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지 여부(현장작동성평가 미대상 기관인 경우)</p>	<p>○ 건설발주공사에 대한 현장작동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기관은 본평가시에도 건설발주사업장 분야는 평가하지 않음.</p>

질의	답변
<p>&lt;④-2 안전보건활동-건설발주 사업장&gt;</p> <p>평가지표: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p> <p>○ 패트롤 현장점검은 기초조사표에 제출한 발주건설현장 대상으로 현장작동성평가와 별개로 방문하는지요? 별개로 방문한다면 시기는 대략 언제쯤인지 기관에 통보를 해주시나요?</p>	<p>○ 패트롤 현장점검은 현장작동성평가와 별개로 수행되며, 기관에 통보되지는 않고 시공사에게 패트롤 방문 일정을 알리고 방문예정임.</p>
<p>&lt;⑤ 안전보건성과&gt;</p> <p>평가지표:D.3. 사망사고 감소 성과</p> <p>○ 현재 평가편람을 따르면 사고사망자 수의 집계방법이 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과실과는 무관하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6조(조사대상재해 등)에 따라 조사만 되어도 집계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만을 집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귀 공단의 의견이 궁금합니다.</p>	<p>○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 성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률 고려하여 직영사업소·수급업체·발주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p>